

의안번호	2219993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8.
추 계 번호	26A356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0조의2 신설 (미래대응기금의 설치)	○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 변동에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 국가발전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 ○ 미래대응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함 - 정부의 출연금(안 제89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조세수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) -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-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- 그 밖의 수익금	의무규정
2	안 제90조의3 신설 (미래대응기금의 운용·관리)	○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용·관리하며, 다음의 용도에 사용함 -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- 계층 간 자산소득 격차의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-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의 상환 -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및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 -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0조의2 (미래대응기금의 설치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0조의3 신설 (미래대응기금의 운용·관리)	

2. 상세사유

□ 개정안은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 변동에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 국가발전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‘미래대응기금’을 설치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재원 및 용도는 다음과 같음

- (기금의 재원) 정부의 출연금(안 제89조의2¹⁾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조세수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 포함),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
 - － 또한, 「국가재정법」제9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²⁾
- (기금의 용도)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, 계층 간 자산·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,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상환, 청년세대 투자 및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,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□ 다만,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의 조성·운용 규모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기금의 설치·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현시점에서 초과 조세수입의 발생 여부 및 규모, 안 제89조의2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여부와 이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정 규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 비율,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

1) 안 제89조의2(세입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 정부는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등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2) 안 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고,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제90조의2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
1.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

2.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

3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(예수금을 포함한다)의 원리금. 다만,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(예수금을 포함한다)에 한정한다.

4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

중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출연 규모 등 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

- 또한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과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, 이에 따른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 여부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□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